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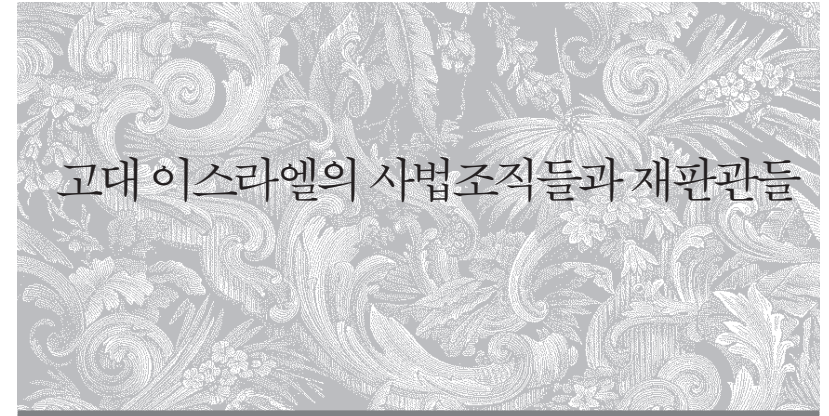
tried to resolve the issue of political privileges by using the concept of priestly purity. The core of this issue is marriage with women of other nations. Interestingly, in this context the identity of the women and the meaning of the word 'foreign' were not related to their 'ethnic' character but to receptivity of 'other' religious groups by the Israelite society. Thus the compositor interpreted the identity of the early Jewish community in close relation to the concept of 'holy seed and purity.' With this concept he accepted the theological tradition in Isaiah 6 and his message was oriented to obey the Torah.

Through this study we come to know how the Gentiles in Israelite society were accepted. It helps us today to newly define Israelite attitudes toward the Gentiles in the light of the Bible.

Keywords

the Gentiles
Ezra and Nehemiah
early Jewish identity
multiculture
mixed marriage

- 투고일: 2015년 04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4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5월 06일



소형근(서울신대)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집행하는 가장 핵심 되는 그룹은 아마도 '판사들'(대법관을 포함하여)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판사들은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을 담당하며, 소송사건 외에 비송사건 등 재판 전체에 관여하여 판결, 결정, 명령 등의 형식으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중재, 조정, 화해 등에도 관여한다. 또한 체포 영장, 구속 영장, 압수 수색 영장 등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¹⁾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재판을 담당하는 자들이 존재했었다. 고려시대에는 중서문하성의 재상이 판사

* 이 논문은 2015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1) [https://mirror.enha.kr/wiki/%ED%8C%90%EC%82%AC\(2015년4월1일 검색\)](https://mirror.enha.kr/wiki/%ED%8C%90%EC%82%AC(2015년4월1일%20검색)).

의 역할을 겸직했고, 판사의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돕는 ‘상서’가 있어서 판사의 감독을 받으며 활동했다. 조선시대에는 지방의 수령인 현감, 군수, 목사, 부사가 판사의 기능을 담당했고, 중앙에는 형조판서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판사라는 호칭이 아닌, ‘판결사(判決事)’로 불렸다.²⁾ 이처럼 사람들의 민형사상의 모든 분쟁과 소송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는 재판관들을 임명하고, 이들로 하여금 사회 정의를 실현하도록 임무를 부여했었다. 이러한 모습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재현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구약성서 본문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 재판관들의 시대적 변화를 살필 것이며, 또한 다양한 형태의 사법조직들을 살피고자 한다.

2. 왕국 이전 시대 사법조직과 재판관들

고대 이스라엘의 왕조 이전 시대라 하면 족장시대, 광야시대, 사사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왕국 이전 시대에는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제정하고, 조직한 사법기관은 아닐지라도, 느슨한 형태의 사법조직과 재판관들이 존재했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기 마련이고, 분쟁은 힘에 의해서든, 법에 의해서든 해결책을 만들어 냈었다.³⁾ 고대 이스라엘의 왕국 이전 시대에는 어떤 유형의 사법조직들이 존재하고 있었을까?

2)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1&docId=177669254&qb=7KGw7ISg7luc64yA102Mk0yCr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SfmqvloRR1Ccssbl6MPGssssstC-401560&sid=PV5LC04TQ009%2BozpJXEbk%3D%3D\(2015년4월1일 검색\).](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1&docId=177669254&qb=7KGw7ISg7luc64yA102Mk0yCr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SfmqvloRR1Ccssbl6MPGssssstC-401560&sid=PV5LC04TQ009%2BozpJXEbk%3D%3D(2015년4월1일 검색).)

3) 개인적인 분쟁 외에도 국가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간 상호조약을 맺는 경우가 있었다. 세계 최초의 평화 조약이 기원전 13세기 히타이트의 하투실리스 왕과 이집트의 람세스 2세 사이에 있었다. 이 조약은 “쌍무적 방위 동맹”이 기저가 되었다. 참고, 함규진, 「조약의 세계사: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조약」(서울: 미래의 창, 2014), 19-28.

1) 족장시대

구약성서 창세기에는 다양한 분쟁들이 나온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들 간의 분쟁(창 16:4-6), 가족들 간의 분쟁(창 31:43-55), 부족들 간의 분쟁(창 26:12-33), 지역민들 간의 분쟁(창 34:1-31) 등이 있었다. 족장시대와 같은 사회를 우리는 일명 분절사회(segmented society)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사회는 성문화된 법이 없고, 정치권력이 중앙집권화 되어 있지 않은 사회를 말한다.⁴⁾ 그러면 이런 분절사회에서 발생했던 분쟁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크뤼제만(C. Crüsemann)은 이 시대에 발생한 분쟁들이 분쟁 당사자들 간의 ‘자조’(Selbsthilfe)와 ‘협의’(Verhandlung)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⁵⁾ 분절시대에는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재를 위한 위원회와 같은 중립적 기구들이 존재하지 않았었다.⁶⁾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지원세력을 조직하여 동원 가능한 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우선시 되었는데, 이것을 ‘자조’라 한다. 그리고 분쟁 가운데 있는 두 세력들이 서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을 조율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협의’라 한다. 예를 들면, 라반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야곱은 도주를 시도했다. 이 사실을 안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기 위해 자신의 “형제들”을 모았다(창 31:23). 이것이 ‘자조’이다. 라반은 도주한 야곱의 뒤를 쫓아가 ‘드라빔’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창 31:35). 라반은 야곱에게서 ‘협의’를 밝히지 못했고, 결국 언약을 맺고, 자신과 야곱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을 제안했다(창 31:44). 이것이 ‘협의’인 것이다. 이 둘은 돌을 무더기로 쌓고, 계약을 체결했다. “[...]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

4) F. Crüsemann, *Der Widerstand gegen das Königtum* (WMNAT 4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194-222.

5) F. Crüsemann, *Die Tora: Theologie und Sozialgeschichte des alttestamentlichen Gesetzes* (München: Chr. Kaiser, 1992), 91-94.

6) S. Roberts, *Ordnung und Konflikt: Eine Einführung in die Rechtsethnologie* (Stuttgart: Klett-Cotta, 1981), 120-122.

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창 31:52). 이렇게 함으로 두 가족들 간의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었다.

그러나 분절사회의 분쟁이 크뤼제만의 주장처럼 ‘자조’와 ‘협의’로만 해결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가장(pater familias)의 권위에 의한 판단으로 소송이 해결된 경우도 있었다.⁷⁾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아브라함의 첩 하갈 사이에 있었던 분쟁이 해결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판결 때문이었다. 즉, 아브라함은 두 여인 사이의 갈등을 부인 사라의 권한으로 이첩시키고(“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창 16:6]), 사라는 그 권위를 넘겨받아 하갈을 확대하게 되어,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라와 하갈 사이의 분쟁이 일단락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가장의 권위로 분쟁을 해결한 모습이다. 또한 분쟁 중에 있는 약자를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루면서 분쟁이 해결된 경우가 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샘 근원을 얻게 된다(창 26:19).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소유권을 놓고 다투었다(창 26:20). 즉,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이삭은 에세과 싯나 우물들을 포기하고 떠나게 되는데, 원인은 그랄 목자들의 폭력 때문이었다.⁸⁾

따라서 족장시대와 같은 분절사회에서는 ‘자조’와 ‘협의’라는 형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던 반면, 가장의 권위로 소송을 해결하거나, 혹은 분쟁자들 중 어느 일방의 폭력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7) H. Niehr, *Rechtsprechung in Israel: Untersuchungen zur Geschichte der Gerichtsorganisation im Alten Testament*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87), 42-50

8) 창세기 20:19-22에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삭의 종들과 그랄 목자 두 집단이 다투었고, 한 집단이 우물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것은 ‘폭력’이 이미 전제되어 있음을 알게 해 준다.

2) 광야시대

광야시대에 재판관을 임명하는 묘사가 출애굽기 18장에 나온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는 르비딤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재판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출 18:13)을 보면서 제안한다.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재판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다. 이들은 “작은 일”(לְכָל־עֲוֹנוֹתֵינוּ)을 재판하고, 모세는 “큰 일”(לְכָל־עֲוֹנוֹתֵינוּ)을 재판하라는 것이다(출 18:22). “작은 일”이라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잘잘못을 알 수 있는 소송건을 말하거나, 판결이 있어 재판하기 쉬운 것들”을 말하고, “큰 일”은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이 재판하기 어려운 일”에 해당한다.⁹⁾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사법제도는 재판의 이원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하급재판에 불복하여 상급재판에 상소하는 것을 연상케 한다. 구약성서에서 하급 재판소의 소송이 해결되지 않아 상급 재판소로 이관되는 예를 찾을 수 있을까? 그 좋은 예가 신명기 17장 8-11절이다. 물론 신명기 17장의 본문은 광야시대가 아닌, 발전된 왕정 시대를 전제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정경비평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명기 17장 8절에는 ‘살인’, ‘다툼’, ‘구타’에 해당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소송들 중에 성중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것은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성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비체아레이크’(בֵּית־עֲוֹנוֹתֵינוּ)로 직역하면 ‘너의 성문들에서’(in your gates)라는 뜻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이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시들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성에는 성문이 있어서 재판관들이 성문재판을 담당하곤 했었다.¹⁰⁾ 구약성서에

9) 소형근, “여호사밧의 사법개혁”, 『구약논단 40집』(2011년 6월 30일), 88.

10) F. Crüsemann, *유허*, 98-104.

도 성문재판에 대한 흔적들이 자주 등장하곤 한다(왕상 21:11-13; 암 5:10-12 등). 일반적으로 지역의 장로들이 성문재판을 담당했었다.¹¹⁾ 그런데 이런 성문재판의 판결에 불복하게 될 경우, 신명기 17장 8절은 예루살렘 상급 재판소에 상소하라는 것이다.¹²⁾ 따라서 이드로가 제안한 출애굽기 18장 22절에 나오는 재판의 상소제도는 신명기 17장 8-13 절의 지역 재판소와 예루살렘 상급재판소의 재판절차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3)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우리말 ‘재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파트’(שָׁפַט)인데, 이 ‘샤파트’가 사사기에서 전체 21회 사용되고 있다. ‘샤파트’가 명사형(분사형을 포함)으로 사용될 때는 ‘쇼페트’(혹은 복수형 쇼페팀)로 우리말 ‘사사(들)’로 주로 번역되고(삿 2:16, 17, 18, 19), ‘샤파트’가 동사형(분사형을 포함)으로 사용될 때는 우리말로 ‘통치하다’, ‘다스리다’는 의미로 번역된다. 사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 ‘샤파트’의 용례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장절	명사형(שָׁפַט)/의미	동사형(שָׁפַט)/의미	목적어(לְכָתוּב)
2:16	사사들		
2:17	사사들		
2:18(x3)	사사들, 사사, 사사		
2:19	사사들		
3:10		통치하다	이스라엘
4:4		통치하다	이스라엘

11) H. Niehr, 위글, 20-22.

12) 정석규는 신명기 18:8-13을 “중앙 법정에서의 재판 절차”를 다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참고, 정석규, 『신명기』 (서울신학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5)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2014), 306; 참고, D. L. 크리스텐센, 『신명기 1:1-21:9』 (WBC 성경주석 6) (서울: 솔로몬, 2003), 699-701.

10:2		통치하다	이스라엘
10:3		통치하다	이스라엘
11:27(x2)	재판관 ²⁾	판결하다	
12:7		통치하다	이스라엘
12:8		통치하다	이스라엘
12:9		통치하다	이스라엘
12:11(x2)		통치하다, 통치하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12:13		통치하다	이스라엘
12:14		통치하다	이스라엘
15:20		통치하다	이스라엘
16:31		통치하다	이스라엘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사기에 나오는 ‘재판관’은 야훼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유일하며(사역: ‘재판관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재판하옵소서’[삿 11:27]), 명사형 ‘쇼페트’는 대부분이 ‘사사’를 말하고, 동사형 ‘샤파트’는 대부분 ‘이스라엘’을 ‘통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고 사사시대에는 소송이나, 분쟁이 없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을 담당하셨다는 흔적이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사시대에 재판은 누가 담당했을까? 사사시대에는 재판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판관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사’, ‘쇼페트’(שָׁפַט)가 재판을 담당했었다. 이것은 여성 예언자이면서 사사로 활동했던 드보라에 대한 보도에서 알 수 있다. 사사기 4장 5절에는 사사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벧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שָׁפַטָה)을 받더라”고 알려준다. 물론 드보라의 주된 업무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벧엘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었다. 드보라는 사사직과 예언자직을 수행하면서 소송이나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인 해석이

나 판결을 동시에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¹³⁾ 이 드보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사들이 재판했다는 흔적을 찾아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지파 동맹체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들과 민형사상의 소송들을 해결할만한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소송들을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주도했거나, 지파의 어른인 장로들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왕국 시대 사법조직과 재판관들

1) 왕정 초기(기원전 10세기)

구약성서에는 이스라엘의 왕정 초기에 재판을 담당했던 자들의 흔적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사무엘하 15장 2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압살롬에게 송사가 있어 왕(= 다윗)에게 재판을 청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러자 압살롬은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3절)고 댓구한다. 이것은 왕이 백성의 송사를 들어줄만한 관리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¹⁴⁾ 실제로 다윗의 군신 목록에는 재판을 담당하는 자들의 관직명이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참고. 삼하 8:15-18; 20:23-26; 왕상 5:16-28). 아마도 왕조 초기에는 지역 재판소에서 장로들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중앙 재판소에서 왕이 직접 재판을 담당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왕궁 안에 재판(בֵּית דִּין)을 위한 보좌의 주랑을 지었다고 알려준다(왕상 7:7). 그레이(J. Gray)는 정의를 집행하는 법정은 고대 왕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공간이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라스 샴라(Ras

13) J. A. Soggin, *Judges* (London: SCM Press, 1981), 71-72.

14) M. Weinfeld, "Judge and Officer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JOS* 7 (1977), 86; 참고. A. A. 앤더슨, 『사무엘하』(WBC 성경주석 11) (서울: 솔로몬, 2001), 331-332.

Shamra) 문서에 따르면 케레트(Keret)¹⁵⁾나 단엘(Dn'il)¹⁶⁾과 같은 고대의 왕들이 개인적으로 공의를 베풀었음을 알려준다.¹⁷⁾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 초기에는 왕이 직접 재판을 담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왕조 중기(기원전 9-8세기)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 중반에는 다양한 재판관들이 등장한다. 이 재판관들은 직업적인 재판관이 되기보다는 재판을 담당하는 기능인(Funktionsträger)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기원전 9세기 지역 재판소에서 재판을 담당하던 자로 ‘장로’ 그룹을 들 수 있다. 아합의 부인 이사벨은 남편의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장로들(זְקֵנִים)과 귀족들(גֵּבּוּרִים)에게 편지를 쓴다(왕상 21:8).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의 지시대로 나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불량자 두 사람 즉, 증인 두 사람을 세운다(왕상 21:12-13). 그리고 나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공포한 후,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도록 지시한다(왕상 21:13). 이 모든 절차는 재판의 과정들이다. 열왕기상 21장 8-13절에는 이세벨에 의한 고발장 접수, 피의자 심문, 증인 채택, 판결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나뭇의 포도원 사건을 재판했던 재판관은 지역 재판소의 재판을 담당했던 ‘장로’로 볼 수 있다.¹⁸⁾ 기원전 8세기로 짐작되는 미가 본문에도 “우두머리들”의 불의한 재판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온다(미 3:9). 여기서 “우두머리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삼’(לָאֲשֵׁרִים)은 지역을 대표하는 ‘장로’(זְקֵנִים)를 의미한다.¹⁹⁾

15) 후부르(Hubur) 왕 케레트의 서사시(Legend of Keret)에는 케레트를 공의로운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 참고. 사무엘 헨리 후크, 『중동 신화』(박화중 옮김) (서울: 범우사, 2001), 183-187.

16) ‘단엘(Dn'il)은 기원전 14세기 우가릿 문서에 나오는 문화의 영웅이었으며, 이름은 ‘엘은 재판관이다’라는 뜻이다.

17) 존 그레이, 『열왕기상』(국제성서주석 9)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271-272.

18) 존 그레이, 『왕상』, 645-648; 참고. G. H. Jones, *1 and 2 Kings vol II* (NCBC) (London: Eerdmans, 1984), 355-357.

19) 볼프(H. W. Wolff)는 미가 3:1, 11의 “우두머리들”을 지역의 ‘장로들’(Älteste)과 같은 지역민들로 생각한다.

또한 기원전 8세기에 재판을 담당했던 자들 중에는 히브리어 ‘사르’(שָׂר, officer)가 있다. ‘사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방백’ 혹은 ‘고관’이다. 일반적으로 ‘사르’는 ‘군대 지휘관’을 의미한다. 이사야 1장 23절에는 불의한 재판을 수행한 “고관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고관들”은 여섯 가지 문제들로 고발당하고 있다. 첫째, 패역한 것이다. 둘째, 도둑과 짝한 것이다. 셋째, 뇌물을 사랑한 것이다. 넷째, 예물을 구한 것이다. 다섯째,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섯째,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여섯 가지 모두가 불의한 재판관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신명기에서 야훼는 부패하지 않은 재판관을 기대했었지만(신 10:17-18; 16:18-19),²⁰⁾ 기원전 8세기의 재판관들은 그러지 못했다. ‘사르’의 재판관 임무는 출애굽기 18:21에 나오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의 역할과 오버랩 되고 있다(참고. 신 1:15-17).

고대 이스라엘의 왕국 이전 시대에 제사장들이 어떤 식으로 재판을 수행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가나안 땅 정착 이후 각 지역 성소들에 제사장들이 임명되었던 사실들(삿 17-18장)은 제사장들에 의한 제의재판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²¹⁾ 크뤼제만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들의 주된 사역이 첫째는 재판의 기능이었고, 둘째는 토라 교육의 기능이었다고 주장한다(미 3:11; 사 2:3; 호 4:4-6; 신 31:9-13).²²⁾ 역대하 19장 8절에는 예루살렘 중앙 재판소에 재판관을 임명하는데,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כֹּהֵן הַגָּדוֹל)이 재판을 담당하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זִקְנֵי יְהוּדָה)이 재판을 담당하게 했다(11절). 역대하 19장 4-11절이 시대착오적인

본문일지라도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인 기원전 9세기에 제사장들에 의한 제의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3) 왕조 말기(기원전 7-6세기)

고대 이스라엘의 왕조 말에 재판을 담당했던 자들에 대한 언급이 구약성서에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신명기 본문을 기원전 7세기 요시야 시대로 추정한다면²³⁾ 다음과 같은 진술은 가능할 것이다. 신명기에는 지역 재판소에 대한 언급과 예루살렘 상급 재판소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예를 들면, 신명기 16장 18절에는 모든 “성(城)”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임명할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성(城)”이라 하면 히브리어 ‘샤아르’(שָׂאָר)를 말하는데, 아하로니(Y. Aharoni)는 이스라엘과 유다 성벽이 기원전 10-9세기에 처음 설치되었다고 말한다.²⁴⁾ 그렇다고 하면 신명기 16장 18절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명기 16장 18절은 앞서 언급했던 어떤 사법조직들 보다 체계화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신명기 16장 18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샤아르’에 “재판장들”(שֹׁפְטִים)과 “지도자들”(רֹאשֵׁי)을 임명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처음으로 직업적인 전문 재판관 ‘쇼페팀’과 ‘쇼페팀’을 보좌하는 ‘쇼테림’이 등장한다. 마홀쯔(G. Ch. Macholz)는 이 ‘쇼테림’을 법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

참고. H. W. Wolff, *Micha* (BKAT XIV/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2), 67.

20) 참고. O. Kaiser, *Isaiah 1-12*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3), 43.

21) 소형근,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과 재판관들』 (한국구약학총서 15)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10), 93.

22) F. Crüsemann, *윗글*, 118. 크뤼제만은 제사장들의 제의재판이 제의적 사건들이라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음을 말한다.

23) 신명기에 대한 비평적 연구는 드 베테(W. M. L. de Wette)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신명기를 기원전 7세기 요시야 시대에 발견한 “율법책”(왕하 22:8)과 연결시켰다. 이후 이 “율법책”을 “원신명기”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신명기 연구에 새로운 주장을 제기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틴 노트(M. Noth)이다. 노트는 신명기를 오경의 마지막 책이 아닌, 신명기 역사서(수~왕하)의 서론으로 이해했으며,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서를 바빌론 포로기인 기원전 550년경에 기록했다고 본다. 참고. 김영진 외 14인, 『구약 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297-325; 한동구, 『신명기 개혁운동의 역사: 열왕기하 16-23장 주석』 (서울: 도서출판 B & A, 2007); 한동구, “신명기의 역사적 사유와 신학”, 『구약논단』, (2011년 3월 31일), 12-32; 최중원, “신명기의 ‘사랑과 계약’에 대한 새로운 연구”, 『구약논단』, (2014년 6월 30일), 42-72.

24) Y. Aharoni, “The Date of Casemate Walls in Judah and Israel and Their Purpose”, *BASOR* 154 (1959), 36.

고 있지만, 재판은 담당하지 않은 하위직 관리라고 말한다.²⁵⁾ 슌크(K.-D. Schunk) 또한 ‘쇼페트’는 항상 ‘중속적인 기능인’으로서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전달하는 자들로 ‘군사 작전의 수행자’(신 1:15; 20:5, 8, 9; 수 1:10; 3:2)로, ‘재판의 영역에서 돕는 자’(신 16:18)로, ‘일반 행정 수행자’(신 29:9; 31:28; 수 8:33; 23:2; 24:1)로 나타난다고 보았다.²⁶⁾ 따라서 기원전 7세기에 비로소 각 성읍의 ‘샤아르’에 직접적인 재판관 ‘쇼페트’를 임명하고, 그 ‘쇼페트’를 보좌하고, 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소테르’를 임명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역 재판소에 임명한 ‘재판관’과 ‘법정 관리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명기 17장 9절에는 예루살렘 중앙 재판소의 존재와 이곳에 임명된 재판관들이 나온다. 신명기 17장 8절에는 지역 재판소(“네 성 중에서”[קִרְבְּנֵיכֶם])에서 민형사상 판결내리기 어려운 소송이 생겼을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²⁷⁾으로 올라가면 그곳에서 어떻게 판결하지를 가르쳐 주는데(신 17:9), 예루살렘 상급 재판소에 임명된 재판관들은 두 그룹, 즉 “레위 사람 제사장”(לְוִיִּם הַכֹּהֲנִים)과 “재판장”(שֹׁפֵט)이 재판관으로서 상주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여기서 재판관들이 ‘레위 사람 제사장’과 일반 ‘재판장’으로 나뉜다는 것은 제의재판과 비제의재판으로 구분된 법리해석과 판결을 담당하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또한 이전 사법조직 보다 훨씬 발전된 제도임이 분명하다. 신명기 17장 8-9절의 상급 재판소 운영에 대한 제도는 출애굽기 18장 22절이 신명기 본문의 원형이라 할 수 있으며, 기원전 9세기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의 사법조직(대하 19:4-11)이 이와 유사한 상소제도라 할 수 있다. 신명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쇼페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25) G. Ch. Macholz, “Zur Geschichte der Justizorganisation in Juda”, ZAW 84 (1972), 334.
 26) K.-D. Schunk, “שֹׁפֵט”, ThWAT VI (Stuttgart: Kohlhammer, 1993), 1257.
 27) 폰 라트(G. von Rad)는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실 곳”이라는 표현은 요시아 시대 제의중앙화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G. von Rad, *Das fünfte Buch Mose: Deuteronomium* (ATD 8)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65), 84-85.

수 있다.

장절	명사형(분사형)	동사형
1:16(x2)	שֹׁפֵטִים	וַשֹּׁפְטִים
16:18(x2)	שֹׁפֵטִים	וַשֹּׁפְטִים
17:9	הַשֹּׁפֵט / (הַכֹּהֲנִים הַלְוִיִּים)	
17:12	הַשֹּׁפֵט / (כֹּהֵן)	
19:17	הַשֹּׁפֵטִים / (כֹּהֲנִים)	
19:18	הַשֹּׁפֵטִים	
21:2	שֹׁפֵטִים / (זְקֵנִים)	
25:1		וַשֹּׁפְטִים
25:2	הַשֹּׁפֵט	

신명기에서 히브리어 ‘쇼페트’가 명사형으로 8회, 동사형으로 3회 사용되고 있으며, 명사형은 ‘재판관’으로, 동사형은 ‘재판하다’로 번역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기원전 7세기 이전에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 ‘쇼페트’는 ‘직업적인 재판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원전 7세기 이전에는 ‘군대 지휘관’(혹은 왕의 관리, שָׂר)이나, ‘제사장’(כֹּהֵן), 혹은 ‘장로’(זֶקֶן)와 같이 본연의 전문적인 직업 활동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원전 7세기가 되면서 비로소 모든 성에 ‘직업적인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고(신 16:18), 이 재판관들이 지역 재판소와 예루살렘 중앙 재판소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 본문에는 이전에 재판관의 기능을 담당했던 자들이 ‘쇼페트’(재판관)와 함께 나란히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명기 17장 9절(“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 신명기 17장 12절(“제사장이나 재판장”), 신명기 19장 17절(“제사장과 재판장”), 신명기 21장 2절(“장로들과 재판장들”)에는 과거 재판을 담당하는 기능인으로 활동했던 ‘제사장’, ‘장로’가 ‘쇼페트’와 함께

나란히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기원전 7세기 요시야 시대에 비로소 모든 성에 직업적인 재판관 ‘쇼페트’가 임명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인 것이다.²⁸⁾

4. 포로기와 포로 이후 사법조직과 재판관들

구약성서에 따르면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대부분의 유다민들은 포로로 끌려갔고(왕하 25:11), 유다 땅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았거나(왕하 25:12), 혹은 거의 남지 않았다(대하 36:20). 따라서 포로민 공동체는 왕이 임명하던 ‘쇼페트’를 임명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 왕국 시대처럼 ‘장로’나 ‘군대 지휘관’의 재판관적 역할 또한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쇼페트’에 의한 재판은 생각할 수 없던 시기였다. 그러나 포로기에 활동했던 제사장 겸 예언자인 에스겔은 “거룩한 것”(the holy)과 “속된 것”(the common)을 구별하여 백성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을 제사장에게 돌리고 있다(겔 44:23). 젠슨(R. W. Jenson)은 “속된 것”(common)이란 ‘매일 일어나는 사건’(quotidian)이나, ‘평범한(unremarkable)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²⁹⁾ 이는 제사장의 토라 교육의 책임을 의미한다. 또한 에스겔 44장 24절은 제사장의 송사(byrI)에 대한 재판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 이는 제사장의 재판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포로기 이스라엘의 토라 교육과 송사에 대한 재판은 제사장이 담당하게 되었고, 또한 제의재판이 아닌, 일반 민형사상의 재판 또한 제사장이 맡아서 처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³⁰⁾

28) 더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H. Niehr, *위글*, 87-101.

29) R. W. Jenson, *Ezekiel*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9), 318.

30) 스가라 3장 7절에는 야훼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네(= 여호수아)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라고 말한다. 여기서 “내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 즉, 포로 이후에는 대제사장이 왕 대신 유다 공동체의 최고 권력자임을 알려준다. 참고. J. Köberle, “Priestertum im AT”, *RE* 3 XVI (1905), 42.

포로 이후 재판관에 대한 언급이 에스라 7장 25절과 10장 14절에 나온다. 에스라 7장 25절의 본문에는 아람어 ‘샤페틴’(ܫܦܬܝܢ)과 ‘다야닌’(ܕܝܢܝܢ)이 함께 나오는데, 이 두 단어는 동의어이며, 동의어가 동시에 사용된 것은 아마도 신명기 사가의 영향으로 짐작된다.³¹⁾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부여한 임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이들로 백성을 재판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었다(스 7:25). 또한 히브리어 본문에 해당하는 에스라 10장 14절에는 ‘각 고을의 재판관’(שׁפֵטֵי הַכִּפּוּזִים)이 나온다. 14절에서 재판관은 ‘각 고을’이라는 한정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닌, 지방의 재판관으로 볼 수 있다.³²⁾ 그러나 에스라 7장 25절과 10장 14절에 나오는 ‘재판관들’의 정확한 출신성분은 알 수 없고, 또한 이들이 재판한 흔적을 에스라 본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제사장 겸 학자(חֹזֵן הַדָּבָר)인 에스라(스 7:11, 12, 21)가 골라(גֹּלַיָּהוּ)를 소집하여(스 10:7),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에게 혼인관계를 끊을 것을 종용하는데(스 10:11),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이 마치 재판관의 역할과 같으며, 재판관의 판결문 공포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된다. 포로 이후에는 짐작컨대 유다 지역의 제사장들과 페르시아에서 임명한 총독(느 5장)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³³⁾

5. 결론

지금까지 고대 이스라엘의 사법조직들과 재판관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국 이전 시대인 족장 시대와 같은 분절사회에

31) 신명기 16장 18절에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이 둘의 기능은 다르지만, 법정 관리라는 차원에서는 유사점을 갖는다. 참고. J. Blenkinsopp, *Ezra-Nehemiah*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8), 150-151.

32) *위글*, 151.

33) H. Niehr, *위글*, 109-110.

서는 ‘자조’와 ‘협의’라는 형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했으며, 또한 가장 (pater familias)의 권위로 소송을 해결하거나, 분쟁자들의 일방적인 폭력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도 했었다. 족장시대에는 사법조직이 부재하던 시대였다. 그리고 광야시대에는 모세가 홀로 재판하다가(출 18:13), 장인 이드로의 제안에 따라 ‘사르’(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를 임명하여 재판의 짐을 나누게 된다. 즉, ‘사르’는 “작은 일”을 재판하고, 이들이 재판하기 어려운 것을 모세가 재판(“큰 일”)한다(출 18:22). 이러한 사법구조는 고대 이스라엘 사법조직의 이원화의 원형인 셈이다. 또한 왕국 이전 시대인 사사시대에는 백성의 소송과 분쟁을 사사들이 주도적으로 재판했던 것으로 보인다(삿 4:5).

이스라엘 왕국 시대 초기에는 왕이 직접 재판을 담당했으며(삼하 15:3; 왕상 7:7), 기원전 8세기까지 재판은 장로(왕상 21:8, 13 등)와 ‘방백’(고관, 사 1:23 등)과 ‘제사장’이 재판을 담당했고, 왕정 후기인 기원전 7세기 요시야 시대에는 ‘직업 재판관’인 ‘쇼페트’가 임명되었다(신 16:18; 17:9 등). 요시야 시대에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을 임명했고, 지역 재판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살인, 다툼, 구타 등에 해당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소송들)은 예루살렘 상급 재판소에 이관시켜 해결할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재판의 상소제도를 의미한다.

이스라엘 포로기에 분쟁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했던 재판 담당자는 제사장이었다. 포로기에 제사장은 정결에 부정을 구별하는 제의재판만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일반 민형사상의 모든 재판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겔 44:23-24). 그리고 포로 이후 재판관에 대한 언급이 에스라 7장 25절과 10장 14절에 나온다. 이 두 본문에서 재판관의 정체성(혹은 출신성분)을 알 수 없는데, 포로 이후에는 짐작컨대 제사장(스 9-10장)과 총독(느 5장)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참고문헌

- 김영진 외 14인, 『구약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사무엘 헨리 후크, 『중동 신화』 (박화중 옮김) (서울: 범우사, 2001).
- 소형근, “여호사밧의 사법개혁”, 『구약논단 40집』 (2011년 6월 30일), 86-104.
- _____,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과 재판관들』 (한국구약학총서 15)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10).
- 정석규, 『신명기』 (서울신학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5)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2014).
- 존 그레이, 『열왕기상』 (국제성서주석 9)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 최종원, “신명기의 ‘사랑과 계약’에 대한 새로운 연구”, 『구약논단』 (2014년 6월 30일), 42-72.
- D. L. 크리스텐센, 『신명기 1:1-21:9』 (WBC 성경주석 6) (서울: 솔로몬, 2003).
- 한동구, 『신명기 개혁운동의 역사: 열왕기하 16-23장 주석』 (서울: 도서출판 B & A, 2007).
- _____, “신명기의 역사적 사유와 신학”, 『구약논단』 (2011년 3월 31일), 12-32.
- 함규진, 『조약의 세계사: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조약』 (서울: 미래의 창, 2014).
- Aharoni, Y., “The Date of Casemate Walls in Judah and Israel and Their Purpose”, *BASOR* 154 (1959), 35-39.
- Blenkinsopp, J., *Ezra-Nehemiah*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8).
- Crüsemann, F., *Der Widerstand gegen das Königtum* (WMNAT

- 4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_____, *Die Tora: Theologie und Sozialgeschichte des alttestamentlichen Gesetzes* (München: Chr. Kaiser, 1992).
 Jenson, R. W., *Ezekiel*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9).
 Jones, G. H., *1 and 2 Kings vol II* (NCBC) (London: Eerdmans, 1984).
 Kaiser, O., *Isaiah 1-12*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3).
 Köberle, J., "Priestertum im AT", *RE* 3 XVI (1905), 32-47.
 Macholz, G. Ch., "Zur Geschichte der Justizorganisation in Juda", *ZAW* 84 (1972), 314-340.
 Niehr, H., *Rechtsprechung in Israel: Untersuchungen zur Geschichte der Gerichtsorganisation im Alten Testament*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1987).
 von Rad, G., *Das fünfte Buch Mose: Deuteronomium* (ATD 8)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65).
 Roberts, S., *Ordnung und Konflikt: Eine Einführung in die Rechtsethnologie* (Stuttgart: Klett-Cotta, 1981).
 Schunk, K. -D., "שֹׁפֵט", *ThWAT* VI (Stuttgart: Kohlhammer, 1993), 1255-1258.
 Soggin, J. A., *Judges* (London: SCM Press, 1981).
 Weinfeld, M., "Judge and Officer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IOS* 7 (1977), 65-88.
 Wolff, H. W., *Micha* (BKAT XIV/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2).

검색어
 재판관
 쇼페트
 지역 재판소
 예루살렘 중앙 재판소
 사법조직

Judicial Organizations and Judges in Ancient Israel

Hyeong-Geun So, Dr. theol.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sraelite judicial organizations and the judges in the Old Testament. In the patriarchal age and segmental period, conflicts were settled by 'self-help,' 'consultation,' 'pater familias,' and one-sided violence between the contending parties. In the wilderness period Moses took his seat to serve alone as judge for the people (Exod 18:13), and by Jethro's suggestion he appointed officials ('sarim') over thousands, hundreds, fifties, and tens as judges. They judged small matters, but Moses judged every great matter (Ex 18:22). This judicial system was a prototype of the dual judicial organization in ancient Israel. In addition, it seems that other judges ('shofetim') dissolved the conflicts between people (Judg 4:5).

In the early part of the Israelite monarchy the king was in charge

of pronouncing judgements at first hand (2 Sam 15:3; 1 Kgs 7:7), and until the 8th century elders (1 Kgs 21:8, 13, etc), officials (Isa 1:23, etc) and priests undertook the legal actions between people. In the latter part of the Israelite monarchy (7th century BC) professional judges were appointed, probably by the king, Josiah. For example, judges and officials for each of the tribes, at every gates (Deut 16:18), and Levitical priests and judges in Jerusalem (Deut 17:9), judged the civil and criminal suits at each position. These 'shofetim' were professional judges. This judicial organization was a system of appeal in ancient Israel. It was the priests that were responsible for making judgements in the case of resolutions of suits in the post-exilic period. The priests in this period were in charge of not only cultic judgements, but also non-cultic judgements, both civil and criminal (Ezek 44:23-24). Mentions of 'shofetim' appear in Ezra 7:25 and 10:14, but the identity of the 'shofetim' in these texts is unknown. It seems that judgements in this period proceed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iests (Ezra 9-10) and governor (Neh 5).

Keywords

judge

shofet

local court

Jerusalem superior court

judicial organizations

- 투고일: 2015년 04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4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5월 06일